



제 429회 국회 (정기회)
제7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 ·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중소기업부의 행정조사
자료제출 의무화〉

■ 정동만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2354호)

2025. 11.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문위원 성 소 미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중소벤처기업부의 행정조사 자료제출 의무화	2
※ 참고자료	8
1. 증거편재 문제 관련 기업사례 및 기술탈취 피해현황	8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정동만의원 등 10인
2. 발의연월일 : 2025. 8. 25.
3. 회부연월일 : 2025. 8. 2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탁·위탁거래에 관한 실태 파악과 수탁·위탁거래의 공정화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관련 기업에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위탁기업이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입은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제기된 경우 법원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해당 사건기록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는 위탁기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위반행위의 존재 여부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함이지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법원의 사건기록 송부 요구에 따라야한다는 강제조항이 없어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위탁기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법원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해당 사건기록의 송부를 요구한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의무화하고자 함(안 제40조제4항 후단 신설).

Ⅲ. 검토의견

1.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중소기업부의 행정조사 자료제출 의무화(안 제40조제4항)

현 행	개 정 안
제40조(자료의 제출 등) ① ~ ③ (생략) ④ 법원은 제1항의 내용에 관하여 제40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 중소기업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에 따른 해당 사건기록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후단 신설> 1. ~ 3. (생략)	제40조(자료의 제출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 ----- 이 경우 중소기업부장관은 <u>정당한 이유가 없으면</u> 이에 따라야 한다. 1. ~ 3. (현행과 같음)

개정안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제1항 또는 제2항1)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과 관련하여 법원이 중소벤처기업

1)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손해배상책임) ① 위탁기업이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 위탁기업은 그 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위탁기업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탁기업이 제25조제1항제1호·제3호·제7호·제14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위탁기업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5조제1항제1호·제3호·제7호·제14호가목1) 또는 같은 호 나목을 위반한 경우: 손해를 입은 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 이내
2. 제25조제1항제14호가목2)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한 경우: 손해를 입은 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5배 이내

처기업부장관에게 사건기록의 송부를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이를 따르도록 하는 내용임.

현행법 제40조제1항²⁾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 또는 대기업등에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사업장 및 공장 등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시설 및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음. 이어서 같은 조 제4항은 위탁기업의 현행법 위반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해당 사건기록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은 이러한 법원의 자료요청시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행정조사 자료를 제출하도

2)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40조(자료의 제출 등)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 중소기업 또는 대기업등에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사업장 및 공장 등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시설 및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1. 제21조, 제21조의2제1항, 제22조, 제22조의2, 제23조, 제24조, 제24조의2 및 제25조에 따른 수탁·위탁거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경우
3. 제20조의4제3항 및 제32조제1항에 따른 사업조정 신청을 받은 경우
4. 그 밖에 수탁·위탁거래의 공정화 및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할 때에는 조사 7일 전까지 조사 일시, 조사 목적 및 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조사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조사하여야 하거나 사전에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그 공무원의 성명, 출입시간, 출입 목적 등을 적은 문서를 관계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④ 법원은 제1항의 내용에 관하여 제40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에 따른 해당 사건기록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1. 사건관계인, 참고인 또는 감정인에 대한 진술조서
2. 당사자가 제출하였거나 현장조사 과정에서 당사자로부터 확보한 기록의 전체목록
3. 그 밖의 해당 사건 관련 조사 기록

록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이러한 개정내용은 기술자료 유용행위 등 현행법 위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해기업의 피해사실과 손해의 입증을 용이하게 하고, 법원의 자료제출 요구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을 것으로 보임.

또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의7³⁾과 같이 소송과정에서 법원으로부터 조사기록의 송부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이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하는 유사 입법례가 있다는 점도 참고할 필요가 있음.

다만, 이와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첫째, 개정안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행정조사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가 무엇인지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법적 명확성 확보를 위해 이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예를 들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4)에 따른 영업비밀의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행정조사 자료

3)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의7(기록의 송부 등)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가 제기된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식재산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7조에 따른 부정경쟁행위 등의 조사기록(사건관계인, 참고인 또는 감정인에 대한 심문조서 및 속기록 기타 재판상 증거가 되는 일체의 것을 포함한다)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기록의 송부를 요구받은 지식재산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부정경쟁행위 등의 금지 또는 예방 청구의 소
2. 제5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의 소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는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⁵⁾

둘째, 관련 입법례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의7제3항6)에서는 행정기관이 법원에 조사기록을 송부하였을 때에는 조사기록당사자에게 법원의 요구에 따라 조사기록을 송부한 사실과 송부한 조사기록의 목록을 통지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 현행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는 해당 내용의 조문이 없는 상태임.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송계속 중 이루어지는 자료제출명령과 이에 따른 회신으로 법원에 자료가 제출되는 경우 그 경과가 기재 및 표시되므로 피신청인은 자료의 제공 사실을 알게 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관련 입법례와 소송당사자의 방어권 보장을 고려하여 사건기록당

4)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5) 개정안과 같이 법원이 사건기록의 송부를 요구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자료제출 의무를 부과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9179)에서는 다른 법률에 따른 비공개 자료와 영업비밀의 경우 자료제출 대상에서 제외하되, 영업비밀이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법원이 판단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이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6)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의7(기록의 송부 등) ③ 지식재산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법원에 조사기록을 송부하였을 때에는 조사기록당사자에게 법원의 요구에 따라 조사기록을 송부한 사실 및 송부한 조사기록의 목록을 통지하여야 한다.

사자에게 조사기록이 송부된 사실과 송부한 기록의 목록을 통지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셋째, 「민사소송법」 제344조제2항⁷⁾은 민사소송에서 문서의 제출의무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보관하거나 가지고 있는 문서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공문서에 대해서는 문서제출명령이 성립하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음.

따라서 중소벤처기업부가 보유하게 되는 행정조사 자료의 경우 행정 법체계 하에서는 공문서의 공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을 따를 것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며, 대법원 판례 또한 공문서의 경우 「민사소송법」상 문서제출명령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일관된 견해임⁸⁾.

7) 「민사소송법」

제344조(문서의 제출의무) ① 다음 각호의 경우에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제출을 거부하지 못한다.

1. 당사자가 소송에서 인용한 문서를 가지고 있는 때
2. 신청자가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것을 넘겨 달라고 하거나 보겠다고 요구할 수 있는 사법상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때
3. 문서가 신청자의 이익을 위하여 작성되었거나, 신청자와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작성된 것인 때. 다만, 다음 각목의 사유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 제304조 내지 제306조에 규정된 사항이 적혀있는 문서로서 같은 조문들에 규정된 동의를 받지 아니한 문서
 - 나. 문서를 가진 사람 또는 그와 제314조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사람에 관하여 같은 조에서 규정된 사항이 적혀 있는 문서
 - 다. 제315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사항중 어느 하나에 규정된 사항이 적혀 있고 비밀을 지킬 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한 문서

② 제1항의 경우 외에도 **문서(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보관하거나 가지고 있는 문서를 제외한다)**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제출을 거부하지 못한다.

1. 제1항제3호나목 및 다목에 규정된 문서
2. 오로지 문서를 가진 사람이 이용하기 위한 문서

8) 대법원 판례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보관 중인 문서는 국가기관의 공문서로서, 민사소송법상 문서제출명령의 예외 대상이며 정보공개법에 따라야 한다고 보고 있음(대법원 2010. 1. 19.

따라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법원의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34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명시적인 예외 조항을 포함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음.

중소벤처기업부는 법원의 신속한 손해배상액 산정과 합리적 재판 진행을 위해 사건기록 제출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입법취지에 동의하는 입장임.

참고로, 개정안과 같이 법원이 사건기록의 송부를 요구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자료제출 의무를 부과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9179)이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이므로, 병합하여 심사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 6788-5463

자 2008마546 결정).

실제로, 본안소송에서 신청인(원고들)은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제보서 및 진술 내용을 입수하기 위해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였고, 원심이 인용함에 따라 피신청인(금융감독원)이 재항고하여 「민사소송법」 제344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당사자가 소송에서 인용한 문서’에 대한 문서제출 명령의 발령요건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8. 29. 자 중요 결정)에서, 대법원은 피신청인이 본안 당사자가 아니므로 「민사소송법」 제34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서제출의무가 없고, 해당 문서는 정보공개법이 적용되는 공문서로서 「민사소송법」 제344조제2항에 따라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환송한 바 있음.

【참고자료】

1

증거편재 문제 관련 기업사례 및 기술탈취 피해현황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 증거부족으로 소송에서 패소한 사례 (에스제이이노테크)

- (분쟁개요) 한화와 태양광 발전에 필수 부품인 태양전지 웨이퍼의 메탈리제이션(Metallization) 장치에 관한 기술 탈취에 관한 분쟁
- (분쟁결과) 기술유용(하도급법) 관련 100억의 손해배상 요구에 대해 2심(1심 패소)은 실손해 5억에 징벌배수 2배를 산정하여 10억 판결
 - * 한화에 전달한 도면·매뉴얼·레이아웃 등이 하도급법상 보호 기술자료가 아니라 판단

소송 관련 기업 애로사항

- "(민사소송에서도) 공정거래위원회가 '공무수행 중 취득한 자료는 유출할 수 없다'고 말해 자료를 받지 못했다" (세계일보, '23.6.19)
- "2019년 10월 공정위가 한화의 기술유용을 인정해 과징금을 부과했는데도 제3자인 공정위가 3년 넘게 조사한 자료를 재판에서 활용할 수 없었다. 에스제이이노테크는 1심에서 증거 부족으로 패소했다." (내일신문, '23.6.5)

□ 중소기업 기술탈취 피해 현황

- 피해 건수는 한해 약 **300건**, 평균 손실액은 **18억원**으로 추정*
 - * '24년 기술보호 실태조사('23년 기준), 표본 4천개사 대상 모수 (57,148개사) 추정값
- 중기부 행정조사·조정신청도 연간 **40~50건** 수준

□ 기술탈취 발생 시 피해 중소기업의 주요 애로사항은 증거수집 등 입증곤란(73%), 소송기간 장기화(60.8%), 소송비용 과다(59.5%) 順*

* '25년 특허청·벤처기업협회 설문조사